

■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[별표 1] <개정 2024. 1. 22.>

표준지휘조직도(제9조제3항 관련)

1. 표준지휘조직도



2. 부서별 임무

부서	임무
대응계획부	가.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지원기관·유관기관 등에 대한 통합 지휘·조정 나. 재난상황정보의 수집·분석 및 상황예측 다. 현장활동계획의 수립 및 배포 라. 대중정보 및 대중매체 홍보에 관한 사항 마. 유관기관과의 연락 및 보고에 관한 사항
현장지휘부	가. 진압·구조·응급의료 등에 대한 현장활동계획의 이행 나. 헬기 등을 이용한 진압·구조·응급의료 및 운항 통제, 비상헬기장 관리 등 다. 재난현장 등에 대한 경찰관서의 현장 통제 활동 관련 지휘·조정·통제 및 대피계획 지원 등 라. 현장활동 요원들의 안전수칙 수립 및 교육 마. 임무수행지역의 현장 안전진단 및 안전조치 바. 자원대기소 운영 및 교대조 관리
자원지원부	가. 대응자원 현황을 대응계획부에 제공하고, 대응계획부의 현장활동계획에 따라 자원의 배분 및 배치 나. 현장활동에 필요한 자원의 동원 및 관리 다. 긴급구조지원기관·지방자치단체 등의 긴급복구 및 오염방제 활동에 대한 지원 등

비고

- 표준지휘조직은 재난상황에 따라 확대 또는 축소하여 운영할 수 있다.
- 부서별 임무는 예시로서, 재난상황에 따라 임무를 선택하거나 새로운 임무를 추가할 수 있다.